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48
----------	-------

발의연월일 : 2026. 4. 27.

발 의 자 : 박민규 · 이학영 · 양부남
김태년 · 염태영 · 박지원
서영석 · 정태호 · 조승래
정진욱 · 김영진 · 김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처분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이른바 ‘혈값 매각’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와 국회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은 무분별한 민영화와 이에 따른 정부 자산의 가치 절하로 이어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민간 전

문가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모두의 자산인 국유재산의 매각 과정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6조).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매각은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20명”을 “23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법률 제21344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매각 예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매각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매각은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

<p>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p> <p>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2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 ⑤ (생략)</p>	<p><u>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p>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23명</u>-----</p> <p>--.</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